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97
----------	------

발의연월일 : 2025. 8.

발의의원 : 신달호 의원, 곽동환 의원

신동윤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약물 사용 인식 확산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나.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의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5.4.1. 일부개정, 2025.7.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쉰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방계획 수립(안 제4조)과 예방교육, 홍보 등 예방사업(안 제5조)의 시행에서 비용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선언적, 권고적인 형태의 조례로, 재정이 수반되는 안 제4조·5조 모두 임의규정임
- 안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 홍보의 경우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신 달 호 (☎ 2049)